

제305회 정례회

2011.12.23(금)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12. 23 (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황규철 의원 외 6명

나. 발의일자 : 2011년 11월 23일

다. 회부일자 : 2011년 11월 28일

라. 상정일자 : 2011년 12월 19일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황규철 의원)

가. 제안이유

- 농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시험 및 분석 수수료 면제범위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험 등의 목적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 수수료 징수 규정 명기(안 제11조제4항)
- 시험등의 수수료 면제범위 확대(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송장섭)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시험 및 분석 수수료 면제범위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 론 요 지 : “생략”
-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험 등의 목적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의 수수료 등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수수료의 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험등을 의뢰하거나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험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 제10조(생 략)</p> <p>제11조(수수료 및 시험등 경비) ① ~ ③ (생 략)</p> <p>< 신 설 ></p>	<p>제1조 ~ 제10조(현행과 같음)</p> <p>제11조(수수료 및 시험등 경비)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시험 등의 목적이 「친환경 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기 위한 경우의 수수료 등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12조(수수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등을 의뢰 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제12조(수수료의 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험등을 의뢰 하거나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험등을 의뢰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관 계 법 령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친환경농산물의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수수료) ① 법 제32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신청,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농산물의 검사신청,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농산물의 검정신청, 농산물검정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별표 12] <신설 2009.12.17>

수수료(제46조제1항 관련)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청(신규·갱신: 5농가 기준) -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2,000원씩을 추가하되, 최고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50,000

나.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 1)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증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1일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명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건당 농가수가 많아 심사기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제 심사에 소요된 일수를 적용할 수 있다.
- 3)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비용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인증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신청(신규·갱신)	1	100,000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국내외)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신청(신규·갱신)	1	200,000

나. 인증기관 지정심사를 위한 출장비(국외)

- 1)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명으로 한다.
- 2) 국외출장비는 국외여비정액표의 기준에 따르며, 국외항공운임은 2등 정액으로 하고, 국외자동차운임은 실비로 한다.

4. 지리적표시 등록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100,000

5.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신청	1	200,000

6.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농산물검정기관의 지정신청	1	200,000

7. 농산물 검사수수료

종 류 별	품 목	중 량	단 위	수수료(원)
곡 류	○ 팔	40kg	대	30
	○ 녹두	40kg	대	30
	○ 기타 곡류 전품목	40kg	대	20
서 류	○ 전품목	40kg	대	20
특 용 작물류	○ 참깨	40kg	대	40
	○ 기타 특용작물 전품목	40kg	대	20
과실류	○ 전품목	15kg	상자	20
채소류	○ 고추	20kg	대	30
	○ 기타 채소류 전품목	20kg	대	20
잠사류	○ 누에씨	-	-	없음
	○ 누에고치	10kg	-	20
수 입 농산물류	○ 정곡	1톤	-	70
	○ 기타 수입농산물류 전 품목	1톤	-	60

주)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수수료는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8. 농산물 검정수수료

구 분	검정항목	단 위	1항목당 수수료(원)
(1) 품 위	○ 정립, 피해립, 이중종자, 이물, 용적중, 싸라기, 입도, 이중곡립, 분상질립, 착색립, 사미, 세맥, 다른종피색, 과균비율, 색갈비율, 결점과율	1항목	8,600
		1점	13,700
		1점	17,200
	○ (조)회분		
	○ 사 분		

(2) 발아율	○ 발아율, 발아세	1항목	30,800
(3) 도정율	○ 미곡의 제현율, 현백율	1항목	9,100
	○ 맥류의 정백율	1항목	18,200
(4) 일반성분	○ 수분	1점	12,000
	○ 단백질	1점	26,000
	○ 지방	1점	26,000
	○ 조섬유	1점	8,600
	○ 산가	1점	8,600
	○ 산도, 당도	1항목	8,600
(5) 무기성분	○ 칼슘, 인, 식염, 나트륨, 칼륨 등	1성분	46,000
	○ 질산염	1점	15,000
(6) 유해중금속	○ 비소, 납, 아연, 구리, 수은 등	1성분	40,000
(7) 잔류농약	○ 클로로피리포스, 엔도설판, DDT, 프로시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다만,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은 1성분으로 인정한다.	1성분	81,400
(8) 곰팡이 독소	○ 아플라톡신 B ₁ , B ₂ , G ₁ , G ₂ 등	1성분	87,000
(9) 항생물질	○ 항생제	1성분	40,000
	○ 합성항균제	1성분	40,000
	○ 호르몬제	1성분	180,300

주1)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유사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주2)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하여 1성분으로 인정하는 농약의 범위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한다.

9. 농지, 용수, 농자재 검정수수료

구분	검정항목	단위	1항목당 수수료(원)
농지 (토양)	○ 카드뮴·구리·납	1점 1성분	10,600
	○ 비소		8,700
	○ 수은		18,300
	○ 6가크롬		18,300
용수 (하천수·호소수)	○ 크롬·아연·구리·카드뮴·납· 망간·니켈·철	1점 1성분	6,900
	○ 비소		13,900
	○ 셀레늄(원자흡광광도법)		6,000

	○ 6가크롬		6,900
	○ 수은		10,600
용 수 (먹는물·먹는샘물)	○ 구리·카드뮴·납·아연·알루미늄·망간·철	1점 1성분	6,100
	○ 셀레늄		6,600
	○ 비소		7,700
	○ 수은		6,600
	○ 6가크롬		3,900
농자재 (비료)	○ 질소, 인산, 가리 등	1점 1성분	10,600
	○ 카드뮴, 비소, 납, 수은 등	1점 1성분	11,800

주)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유사항목 또는 관련 기관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